

ID 모아보기 서비스 이용약관

제1조(목적)

이 약관은 주식회사 국민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과 이용자 사이의 "ID모아보기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"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-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- 1. "ID모아보기 서비스"란 개인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이 본인명의의 다수의 고객정보(이하 "CIF") 및 인터넷뱅킹 ID를 보유한 경우 지정한 대표ID로 로그인하여 본인의 다른 ID 또는 CIF의 계좌 조회 및 이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 - 2. "대표ID"란 서비스 이용자의 다른 ID나 CIF의 계좌 조회 또는 이체의 권한을 부여받은 ID를 말합니다.
 - 3. "부ID"란 대표ID에서 보유 계좌의 조회 또는 이체가 가능하도록 등록된 ID또는 CIF를 말합니다.
 - 4. "ID모아보기 계좌조회"란 대표ID로 로그인하여 서비스 등록된 부ID의 계좌의 잔액 및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.
 - 5. "ID모아보기 출금"이란 대표ID로 로그인하여 서비스 등록된 뷔D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타 계좌로 송금 하는 것을 말합니다.
 - 6. "ID모아보기 출금계좌등록"이란 ID모아보기 출금을 이용하기 위하여 부ID의 계좌를 대표ID의 출금 계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서비스 안내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제3조(서비스 이용대상)

- 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- 1. 대표ID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인터넷뱅킹을 가입한 순수개인, 개인사업자, 관련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입니다. 관련서류란 임의단체 확인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합니다.
 - 가. 단체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
 - 나.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등록증, 회의록, 의사록 등)
 - 다. 조직구성원 명부
 - 2. 부ID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인터넷뱅킹 미가입 또는 개인인터넷뱅킹을 가입한 순수 개인, 개인사업자, 관련서류 미제출 임의단체입니다.
 - 3. 상기 1호, 2호에 해당하더라도 안심스위치서비스 및 지연이체서비스에 가입한 ID는 대표ID 또는 부ID로 이용 불가합니다.
- ② 서비스 대상 계좌는 인터넷뱅킹 서비스 대상계좌와 동일하나 공동명의계좌 및 보험/공제 계좌는 제외합니다.



제4조(서비스 이용신청)

- ① 이용대상 고객이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대표ID와 부ID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은행이 승낙한 경우 이용계약이 완료됩니다. 다만, 순수개인 고객의 경우 인터넷뱅킹/모바일뱅킹을 통해 휴대폰 본인인증, 부ID의 인증서 및 대표ID의 전자서명을 제출하는 등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이용계약이 완료된 고객은 ID모아보기 조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ID모아보기 출금을 이용하려면 부ID의 계좌 중 이용을 희망하는 계좌를 은행 영업점 신청서 제출 또는 인터넷뱅킹/모바일뱅킹에서 은행이 정한 방법을 통해 ID모아보기 출금계좌등록을 해야 합니다.

제5조(서비스 이용방법)

서비스 이용계약 완료 시 은행은 대표ID에 대해 대표ID의 보안매체,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부ID의 계좌를 조회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. 이에 따라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- 1. 인터넷뱅킹/모바일뱅킹에서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ID모아보기 계좌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2. 부ID의 계좌 중 ID모아보기 출금계좌 등록된 계좌에 대해서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ID모아보기 출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(이체 한도의 적용)

- ① ID모아보기 서비스 이용 시에는 한 개의 계좌를 2개 ID(대표ID 및 부ID)에 출금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 니다.
- ② 이용계좌가 대표ID에만 출금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ID의 이체 한도를 적용합니다.
- ③ 이용계좌가 2개 ID(대표ID 및 부ID)에 모두 출금 등록된 경우 대표ID로 로그인하여 이체한 금액은 2개 ID(대표ID 및 부ID)의 이체 한도에서 동시에 차감됩니다. 또한, 부ID의 이체 한도가 0원이 되면 비록 대표ID의 이체 한도는 남아 있더라도 부ID의 한도를 차감할 수 없으므로 이체를 할수 없습니다. 즉, 이체 한도는 출금 계좌 등록된 각 ID의 이체 한도 중 낮은 이체 한도가 적용됩니다.

제7조(수수료)

- ①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은행은 별도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은행이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.
- ②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ID모아보기 출금 등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당 서비스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제8조(거래의 제한)

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이 때에 다음 각 호 사유의 발생여부는 대표ID를 기준으로 하고 부ID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표ID에 해당 사유가



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
- 1. 이용자가 3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된 접근매체를 제시하거나 입력한 경우. 단, 간편비밀번호 (또는 PIN), 보안카드 일련번호, 바이오정보의 경우 5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경우
- 2.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(OTP)를 전자금융 보안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OTP에서 생성되는 비밀 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10회 이상 연속하여 틀린 경우
- 3. 12개월 이상 이체실적이 없어 장기미사용 이체제한에 등록되는 경우
- 4. 기타 은행에서 정한 인터넷뱅킹 ID별 제한사항

제9조(보안서비스의 적용)

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보안서비스를 신청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이 때다음 각 호의 보안서비스는 대표ID를 기준으로 하고 부ID에 다음 각 호의 보안서비스가 신청되어 있어도 대표ID에 해당 보안서비스가 신청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는 보안서비스의 적용을받지 않습니다.

- 1. 이용 PC 지정서비스 또는 KB스타뱅킹 이용폰 지정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
- 2. 인터넷뱅킹 보안 SMS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
- 3. 인터넷뱅킹 전화승인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
- 4. 이용자가 입금계좌를 지정한 경우
- 5. 기타 은행에서 정한 인터넷뱅킹 ID별 보안서비스

제10조(서비스 해지)

- ① 서비스의 이용 해지는 인터넷뱅킹/모바일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처리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.
-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- 1. 제3조의 이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고객이 은행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은행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서비스가 신청된 경우
 - 2. 고객이 서비스 신청 당시 제3조의 이용대상이었으나 이후 조건이 변경되어 이용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- ③ 은행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즉시 이용자에게 해지 사유 및 해지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며, 이용자는 해지 1개월 전까지 은행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④ 은행이 이용자에게 해지를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"이용자가 해지 사실 통지일로부터 해지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지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.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
제11조(손해배상 및 면책)

- ①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,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·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



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.

- 1. 회원이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폰 및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, 사용을 위임 또는 양도,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(「전자금융거래법」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양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)
- 2.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스마트폰 및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
- ③ 회원이 은행에게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은행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은행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- ④ 제3조에서 정한 대상 고객이 제5조의 방법으로 서비스 신청하여 이용하는 경우 대표ID에 대한 부ID 계좌의 조회 및 이체권한의 부여와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 발생 시 은행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.
- ⑤ 이 약관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.

제12조(관할법원)

-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은행과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.
- ②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 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13조(준거법)

이 약관의 해석·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.

제14조(약관의 변경)

-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(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)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"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.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서비스의 이용신청을 해지할 수 있고,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



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
제15조(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

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 「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」 등을 적용 합니다.

부 칙(2018. 12. 20)
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(2020. 12. 10)
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(2021. 4. 19)
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(2022. 4. 22)
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(2023. 4. 26)
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2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.